

의안번호	제2049호
의 결 년 월 일	2019. 10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-----	--

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천재기 의원 외 3인
발의연월일	2019. 10. 1.

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

(천재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9. 10. 1.

발 의 자: 천재기·배상길·최을석
하창현 의원(4인)

1. 제정이유

-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및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 교육 등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고성군 4에이치육성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사업,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, 사업계획서의 제출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결산보고 등,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-29호
 - 입법예고 기간: 2019. 10. 4. ~ 10. 10(6일)
 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: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4에이치활동 단체”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각 목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 수립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 지원)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
2.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
3.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·국외 연수
4.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사업계획의 제출)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결산보고 등)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

2.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

②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(약칭: 4에이치법)

[시행 2008. 3. 22] [법률 제8758호, 2007. 12. 21, 제정]

농촌진흥청(지도정책과) 063-238-0919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4에이치“란 명석한 머리[Head, 지육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덕육], 부지런한 손[Hands, 노육] 및 건강한 몸[Health, 체육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[4-H]을 말한다.
2. “4에이치활동“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 - 가.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·문화활동,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
 - 나. 4에이치 이념을 확산·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
 - 다.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
 - 라.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

제3조 (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)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 (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)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

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 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
2.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3.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

제5조 (경비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(사업계획 등의 보고)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 (결산 보고)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업무검사 등)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 (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)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,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·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 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
2.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·사용한 자

부칙 <제8758호, 2007. 12. 21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